

### **행정처분의 기준** (제53조 관련)

**1. 일반기준**

- 가.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.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.
- 나. 가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(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)의 다음 차수로 한다. 다만, 적발된 날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전에 한 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 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.
- 다. 둘 이상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행정처분의 기준이 다를 때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.
- 라. 위반행위가 4개 이상이거나 아동에 대한 학대 등 중대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도 불구하고 1차 위반 시에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.
- 마.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그 밖에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각각 한 차례에 한정하여 사업정지 또는 시설의 장 교체를 갈음하여 개선명령을, 시설 폐쇄를 갈음하여 시설의 장 교체 또는 6개월 이내의 사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. 이 경우 해당 처분은 차수의 산정에 산입하지 않는다.

**2. 개별기준**

위반행위	근거 법조문	행정처분 기준		
		1차 위반	2차 위반	3차 위반
가. 시설이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	법 제56조 제1항제1호	개선 명령	시설의 장 교체	시설 폐쇄
나.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설치·운영하는 시설로서 그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	법 제56조 제1항제2호	시설 폐쇄		
다. 설치목적의 달성이나 그 밖의 사유로 계속하여 운영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	법 제56조 제1항제3호	시설 폐쇄		
라.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아동학대 행위가 확인된 경우	법 제56조 제1항제4호			

1) 보호대상아동에게 성적 폭력 이나 성적 가혹행위를 한 경 우		시설 폐쇄		
2) 보호대상아동에게 신체적· 정신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한 경우		시설 폐쇄		
가) 보호대상아동에게 중대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피해 를 입힌 경우		1개월 이내 사업정지	3개월 이내 사업정지	시설 폐쇄
나) 가) 외의 경우				
3) 아동복지시설의 장 또는 종 사자가 보호대상아동을 방임 한 경우		시설 폐쇄		
가) 보호대상아동에게 중대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피해 를 입힌 경우		1개월 이내 사업정지	2개월 이내 사업정지	3개월 이내 사업정지
나)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기 본적 보호·양육·치료를 소홀히 한 경우로서 가) 외의 경우		7일 이내 사업정지	15일 이내 사업정지	1개월 이내 사업정지
다) 보호대상아동에게 법 제 31조에 따른 교육 등 기본 적 교육을 소홀히 한 경우		6개월 이내 사업정지	시설 폐쇄	
마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으로 경비의 지원을 받은 경우	법 제56조 제1항제5호	6개월 이내 사업정지	시설 폐쇄	
바. 아동복지시설의 사업정지기 간 중에 사업을 한 경우	법 제56조 제1항제6호	개선명령	6개월 이내 사업정지	시설 폐쇄
사.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	법 제56조 제1항제7호			